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0. 10. 29.)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 【 목 차 】

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1
2.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 30
3. 거창군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4.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5.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7.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7
8. 거창군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조례안 ----- 91
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 조례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 및 평가,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가능발전의 실현 등 군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거창군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다.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9조 부터 제23조까지).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강화 등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20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6. ~ 9. 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녹색성장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녹색생활 영위를 위해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내지 안 제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토록 하였음.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내지 안 제2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을 위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및 대책수립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위의 내용과 같이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 거창군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

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녹색성장기획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

**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 ②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기업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2.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녹색산업 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규제의 선진화)** ①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

질의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의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 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⑪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

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절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4.14]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13, 제정]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

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을 위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거노인 공동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 이상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다. 등록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군수는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 경비 또는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하되,
-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함

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사유에 관하여 규정함

- 군수가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었거나 (이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공생활을 포기할 때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로 함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8조, 제27조의2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으로 확보 계획(60백만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17. ~ 10. 6.)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이상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원범위는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경비의 일부와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연간 14,300천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400천원정도 지원되고 반면에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는 14,300천원정도 지원 계획으로서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의안번호 제2010 - 43호>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세대(世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금전보상 차원의 부양등에 필요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부모에 대한 부양환경 조성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함

다. 효도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라. 효도수당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지급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지급함
- 군수가 효도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를 위하여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토록 함

마. 효도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효도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군수는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분한 때,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하며,
- 지급중지 사유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면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으로 확보(15,000천원)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9. 20. ~ 10. 10.)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효 사상을 앙양하고 경로효친 사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관내의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가정으로서 월 1십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며 효도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기 지급된 효도수당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효도수당 지급시책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이 처해 있는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8. 4] [법률 제8610호, 2007. 8. 3, 제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금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변경함(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
    - 중·고등학생 ⇒ 고등학생·대학생
- 나.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중전 중·고등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기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현행: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자(중·고등학생 공통 적용)

○ 개정

- 고등학생: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

- 대 학 생: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 새마을장학생의 신청과 추천, 선발 등 추진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안 제5조 삭제).

라.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지급금액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  
로 구분하여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함(안 제7조).

○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

마. 우등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로서 중·고등  
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하락비율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현행: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  
센트이하로 떨어진 경우

○ 개정

- 고등학생: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 대 학 생: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  
진 경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를 순화함.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2010년 본예산(4,9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8. 27. ~ 9.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생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에 관하여 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대학생)
-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 장학금 지급금액을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 우등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금」의 지원대상, 지급금액 등을 상호 감안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제3451호, 2009. 10.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0.26, 1983.07.30, 1989.05.23, 2000.06.10, 2009.08.13, 2009.10.15>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1.08.12, 2009.08.13>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08.12, 1993.11.25, 2000.06.10, 2009.08.13>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0.03.03, 1981.08.12, 1989.05.23>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1.08.12, 2000.06.10, 2004.06.03, 2009.10.15>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신설 1981.08.12><개정 2004.06.03>
-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 학년마다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장이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6.10>

제5조(선정) ① 도 새마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4,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6.10, 2009.10.15>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2000.06.10>
2. 삭제 <2000.06.10>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4.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2000.06.10>

② 삭제 <1989.05.23>

제6조(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1977.03.25, 1978.03.13, 1980.06.23, 1981.08.12, 1982.10.26, 1989.05.23, 1990.05.29, 2000.06.10, 2000.11.01>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5>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983.07.30, 1985.01.26, 1993.11.25, 20>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2000.6.10>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개정 1983.07.30>

2. 삭제 <2000.06.1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1985.01.26, 2000.06.10, 2004.06.03, 2009.10.15>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00.06.10>

②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3.11.25>

제10조 삭제 <1999.10.11>

제11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8.03.13, 1983.07.30>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는 50%, 시·군은 50%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1983.07.30>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개정이유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외국인”으로 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가하며,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 사항신설과 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가.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



18조까지).

○ 제명 변경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불일치 사항 조정

-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

-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유지)

나.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도록 함

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5호 신설).

○ 종전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나 생활·취업 등 상담,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외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추가함

라.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2장의 제목,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 부여

○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 위촉위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이내로 확대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함.

## IV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에 반영(2,100천원)

###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0. 9. 20. ~ 10. 9.)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명을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범위도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로 확대 하는 등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 실질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07. 7.18] [법률 제8442호, 2007. 5.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9. 6.20] [법률 제9142호, 2008.12.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1999.2.5,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 「거창군 포상조례」

( 제정) 1965.04.20 조례 제 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성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이 포상 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 제정) 2004.05.21 조례 제1708호  
(전문개정) 2005.10.05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거창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거창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
  3. 10인 이상의 군민
  4.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
-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거창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1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주간)**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2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안 별표 3 신설).
- 다. 현행 다음 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6항후단).
-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직기간 미산입, 연가 미가산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사유에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포함하여 공제토록 함(안 제18조, 제20조제1항).
- 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과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참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원격지 간 전보발령 부임’ 사유는 삭제함(안 제22조).
- 바. 별표 3으로 규정한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별표 4로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함(안 제23조제1항, 안 별표 4).
-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은 정비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조사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 아.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



부터 제16조까지 삭제 등).

## IV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70조, 제71조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7조의4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경남도 행정과-28185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9. 1. ~ 9. 2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일반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공가 등 복무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  
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47호, 2010. 3.22, 일부개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1.1, 2007.12.3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



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 **부칙<제22275호,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2010.6.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0. 1.31] [법률 제9386호, 2009. 1.30, 타법개정]

**제47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4. 1] [대통령령 제22099호, 2010. 3.26, 일부개정]

**제26조(건강검진)** ① 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

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7.7.25]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15]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2010. 7.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09.5.22)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09.10.30)됨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등 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제명, 안 제2조).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 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 7조)

- 위원회 명칭변경: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변경: 군수 ⇒ 부군수
- 당연직위원 명시: 업무관련 실·과장 ⇒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라.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정보화책임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

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으로서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 (경상남도 정보통계 담당관-15415('09.11.11))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20. ~ 10. 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09. 8. 23)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지난 1999. 1. 15일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조례형식이나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

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



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

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10 - 48호>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1995.4.10일 설립·개원한 거창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다.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

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안 제6, 제9조).

- 군수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며,
-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지원 외에도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내용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각종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하고,
- 운영보조금은 상근직원의 인건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2010년 본예산 확보(90백만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7. 16. ~ 2010. 8. 7.) 결과: 붙임(2건 접수)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기간 : ‘10. 7. 16 ~ 8. 7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거창문화원장	제8조 운영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 <u>지원하여야 한다.</u>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은 자치단체 와 지방문화원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어려움	미반영
	제8조제2호 문화원이 시설 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비 → <u>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u>	문화원사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물 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함	반영

## 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거창 문화원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유의 문화를 계발, 보존 및 발전시키고 거창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와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용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화원의 발전과 우리군의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원)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계발), 보급, 보존, 전승(전승) 및 선양(선양)
2. 향토사(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2.22]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일부개정]

**제2조(설립인가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2009.12.2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0. 18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0. 19

### II 재정이유

-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전입 인원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개별 지원신청서를 통합하여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
- 조례 제정 당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한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 가. “전입세대”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전입 인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제3조)

- 현행: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 개정: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

나. 임신·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부모에 대한 육아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 시책의 내용과 자격, 지원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5호, 제8조제2항 신설).

-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는 자로 하고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현행 :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
- 개정 :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

라.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각 부서별 개별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지원과 전입장려지원으로 구분한 통합 지원신청서로 신설·규정함으로써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함(안 별지

-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안 별지 서식 신설).
- 현행: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입장려 등 지원
  - 개정: 현행 개별 서식을 삭제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서식)로 통합 신설

마. 이 조례의 제정 당시(2007.08.01)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 부칙 제4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안 조례 제1852호 부칙 제4항 삭제).

##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1010추진단 1억6천만원, 보건소 2천5백만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9. 8. ~ 2010. 9. 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 하였으며(안 제3조),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접종을 추가하였으며(안 제5조)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전 고등학생)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조치하였음. 다만, 농어민자녀, 저소득가구, 공무원자녀 등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과.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